



長錦商船株式會社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http://www.sinokor.co.kr

TEL:(02)774-1422 / FAX:(02)774-5932 / TLX:K23920

수 신 : 화주 제위

발 신 : 장금상선(주)

제 목 : 일본세관 출항전보고 제도(AFR)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

1. 평소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, 일본세관 주관하에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AFR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= 다 음 =

가. 개요

- 선사 및 NVOCC가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(공 컨테이너, 벌크 제외)
- 2014년 3월1일 시행 예정 (3월10일부터 의무 시행)
- 현재는 선사만 일본 입항 24시간전에 일본세관에 수입 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AFR시행으로 선사는 Master B/L, 포워드(NVOCC)는 HOUSE B/L에 대해 출항 24시간전 신고의무가 추가됨.
- 선사 및 NVOCC가 신고 접수 마감일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

나. 신고 방법

- 일본에 있는 NACCS(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)을 통해 세관으로 신고
- 방법1)선사/NVOCC가 일본에 시스템을 두고 NACCS와 연계해서 신고
- 방법2)선사/NVOCC가 NACCS와 계약한 SP(SERVICE PROVIDER, 예 KL-NET)를 이용하여 신고

다. AFR 화물정보 신고후 일본 세관 사전통보 내용

-> 화물 정보를 신고한 후 24시간 안에 하기와 같은 RISK 분석 결과를 통보해줌
DNL(Do Not Load): 선적 불가 통보. 수정신고 가능

HLD(Hold): B/L 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. 화물정보 수정하여 전송.

DNU(Do Not Unload): 양하 불가 통보.

SPD : 화물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(사전신고 없이 수입적하목록이 신고된 경우)

화물 정보를 신고마감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양하허가 신청을 해야함.

->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 별도의 통보를 하지는 않음

AMR(출항전 목록신고)후 ATD(출항일시) 전송전까지 목록 수정가능.

ATD 전송완료 후에는 B/L신고 및 정정(AMR,CMR,AHR,CHR)이 제한됨

2014.02.24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라. AFR 관련 준비 & 협조 사항

- 하우스비엘 사용하는 포워더의 경우 AFR신고를 위해 NACCS에서 발급하는
REPORTER ID & NOVCC CODE 필요 -> 사이트주소 : <http://www.naccscenter.com/afr/>
- 출항 24시간전 혹은 출항전 신고를 위한 서류 클로징 타임 준수(실화주 & 포워더)
- 서류 클로징 타임까지 비엘 체크 마감까지 요망
- 서류마감 후 B/L 정보 수정 및 하우스 비엘 수정 신고시 선사와 확인 후 변경.

마. 추가된 비엘 필수 항목 - S/R 제출 및 입력시 반드시 기재 요망

- H.S CODE(6자리) 필수 기재 - 콘솔 & 심플 모두 해당
- 쉬퍼 & CNEE & NOTIFY - 업체명 & ADDRESS & 연락처 필수 기재.
(단 CNEE: TO ORDER인 경우 NOTIFY상 정확한 내용 기재)
- Marks & Numbers of Cargo란 기재 요망

* 3월1일이후 출항 모선에 대해 변경된 서류 클로징 TIME은 해당 모선 담당자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AFR 관련 문의

서울 이지현 과장 TEL)02-6496-7796 부산 김학희 대리 TEL)051-950-3300

부산 이지현 대리 TEL)051-950-3368 부산 강채란 사원 051-950-3389

감사합니다.

2014.02.24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